

#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 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Research Institute for Aerospace Engineering and Technology(RIAET)이다.

**제2조** (목적)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항공우주, 기계 및 재료산업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
2. 외부로부터 위탁된 조사, 연구, 설계 및 용역
3. 항공우주, 기계 및 재료산업기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, 정리 및 조사
4. 간행물 발간, 연구발표, 강연회의 개최
5.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** (조직) 본 연구소에는 부속 항공우주부품개발연구센터를 두며, 항공산업기술 연구부(항공구조분야, 항공역학분야, 동력장치분야, 제어공학분야), 우주산업기술 연구부(발사체분야, 위성체분야, 탑재체분야, 관제시스템분야), 기계산업기술 연구부(기계역학분야, 생산기술분야, 열공학분야, 유체공학분야), 운항기술 연구부(시험비행분야, 모의비행분야, 항공기상분야), 재료 및 환경산업기술분야(항공우주재료분야, 재료공학분야, 환경기술분야), 및 관리부(행정담당, 출판담당)를 둔다.

**제5조**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,연구계획 수립, 연구결과의 평가, 외부로부터의 의뢰받은 과제에 대한 결정,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,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, 소장, 부소장, 간사와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연구소에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소장, 부소장, 간사와 6명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.
-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** (소장 및 부소장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둔다.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부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,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 (감사 및 간사)** ① 감사는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회계감사를 관장한다.

② 간사는 연구소의 총무, 재무, 편집 및 사업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 (연구원)** ① 연구소에는 5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전임교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 연구보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 (임기)** 소장, 운영위원, 감사, 및 간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
**제10조 (총회)** 총회는 연구원 전원으로서 구성한다.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2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**제11조 (정족수)**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재 정

**제12조 (재정)**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조금, 학술용역사업 수익금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3조 (회계년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4조 (서무)** 연구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전임 또는 겸임 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15조 (업무승계)** 연구소는 항공산업기술연구소와 항공우주부품개발연구센터의 모든 업무와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.

**제16조 (규정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 4 장 기 타

**제17조 (시행세칙)**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항공산업기술연구소와 항공우주부품개발연구센터가 합병하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